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 사 경 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7. 6. 18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97. 6. 19

다. 상 정 일 자 : '97. 6. 24 (제55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 안 설 명 자 : 내무과장 이 수 철

나. 개 정 사 유

ㅇ 지방자치시대의 다양하고 변화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제고하므로서 주민에 대한 보다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키 위함.

다. 주요내용

ㅇ 경영정책실 폐지, 농업정책과 신설하고, 도시과를 도시주택과로 명칭을 변경(안 제2조)

ㅇ 경영정책실 분장사무중

- 군정시책개발과 광역행정업무, 주요시책의 심사분석, 경영수익에 관한 사항 등을 기획감사실 분장사무로(안 제3조)
- 장학진흥위원회 운영 및 장학진흥기금조성 업무 및 견문보고제 업무는 내무과 분장사무로(안 제7조)
-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연구업무는 농업정책과 분장사무로 (안 제12조)

ㅇ 군정에 관한 홍보 편찬업무를 문화공보실 분장사무로(안 제5조)

ㅇ 건설과 분장사무인 중기등록에 관한 업무, 지역경제과 분장사무인 차량 등록업무, 도시과 분장사무인 도시계획확인원 및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발급업무를 민원봉사실 분장사무로(안 제6조)

ㅇ 산업과 분장사무중 양곡관리업무, 건설과 분장사무중 농업기반시설업무를 농업정책과 분장사무로(안 제11조의 1, 제12조)

ㅇ 도시과의 분장사무중 새마을 사업의 종합추진 및 취약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광고물에 관한 사항을 건설과 분장사무로 조정함.
(안 제15조, 제16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민병항)

ㅇ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사유와 같이 지방자치 시대의 다양하고 변화된 주민의 욕구와 지역사회 발전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개정 조례로서 화순군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생 략 "

6. 심 사 결 과

「원 안 가 결」

7. 첨 부 :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7-95

제출년월일 : 1997. 6. 18
제 출 자 : 화 순 군 수

1. 제 안 이 유

ㅇ 군민의 다양하고도 변화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행정내무의 비효율적 구조를 타파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키 위하여 실시한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ㅇ 우리군의 행정기구와 실과간 분장사무를 이와 부합되도록 합리적으로 개편, 변화된 행정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임.

2. 주 요 골 자

ㅇ 경영정책실 폐지, 농업정책과 신설, 도시과를 도시주택과로 명칭을 변경(안 제2조)

ㅇ 경영정책실 분장사무중

- 군정시책개발과 광역행정업무, 주요시책의 심사분석, 경영수익에 관한 사항 등을 기획감사실 분장사무로(안 제3조)
- 장학진흥위원회 운영 및 장학진흥기금 조성 업무 및 견문보고제 운영 업무는 내무과 분장사무로(안 제7조)
-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연구업무는 농업정책과 분장사무로 함. (안 제12조)

ㅇ 군정에 관한 홍보 편찬업무를 문화공보실 분장사무로 함(안 제5조)

ㅇ 건설과 분장사무인 중기등록에 관한 업무, 지역경제과 분장사무인 차량등록업무, 도시과 분장사무인 도시계획 확인원 및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업무를 민원봉사실 분장사무로 함(안 제6조)

ㅇ 산업과 분장사무중 양곡관리업무, 건설과 사무중 농업기반시설업무 등을 신설된 농업정책과 분장사무로 함(안 제11조의 1, 제12조)

ㅇ 도시과의 분장사무중 새마을 사업의 종합 추진 및 취약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광고물에 관한 사항을 건설과 분장사무로 함(안 제15조, 제16조)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실과의 설치) 화순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민원봉사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업정책과, 산업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주택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둔다.

제3조(기획감사실)중 제8호 내지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군정의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9. 국제교류업무 종합기획 조정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10. 광역행정에 관한 사항

11. 주요시책의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12. 공약사항 처리 분석에 관한 사항

13. 군 경영수익 기획에 관한 사항

제4조(경영정책실)를 "삭제"한다.

제5조(문화공보실)중 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군정에 관한 홍보 편찬업무에 관한 사항

제6조(민원봉사실)중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차량, 중기 등록에 관한 사항

6. 도시계획 확인원,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에 관한 사항

제7조(내무과)중 제11호를 제13호로 하고, 제11호 및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장학진흥위원회 운영 및 장학진흥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12. 견문보고제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의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 1(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정책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2. 농지의 보존, 이용 및 개량에 관한 사항
3. 농어민 소득증대사업에 관한 사항
4. 양곡의 관리 수급 조절 및 가공 등에 관한 사항
5. 정부양곡관리 대행기관 및 수탁기관에 관한 사항
6. 농업용수개발 및 경지정리에 관한 사항
7. 개간 허가에 관한 사항
8. 토지 및 농지개량조사 측량 및 집행감독에 관한 사항
9. 기타 농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제12조(산업과)중 제2호 및 제7호, 제8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식량작물의 증산 및 장려에 관한 사항

제15조(건설과)중 제6호 내지 제8호를 삭제하고, 제9호 내지 제13호를 제6호 내지 제10호로 하며, 제11호 및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의 종합추진 및 취약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12. 광고물에 관한 사항

제16조(도시과)중 "도시과"를 "도시주택과"로 하고, 동조중 제6호 및 제7호를 삭제하며, 제8호 내지 제14호를 제6호 내지 제12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제2조(실과의 설치) 화순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경영정책실, 문화공보실, 민원봉사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둔다.	제2조(실과의 설치) 화순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민원봉사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업정책과, 산업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주택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둔다.
제3조(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7. (생략) (신설) (신설)	제3조(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7. (현행과 같음) 8. 군정의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9. 국제교류업무 종합기획조정 및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신설) (신설) (신설)	10. 광역행정에 관한 사항 11. 주요시책의 심사분석에 관한사항 12. 공약사항 처리분석에 관한 사항 13. 군 경영수익 기획에 관한 사항
제4조(경영정책실) - - - 생략 - - -	제4조 (삭제)
제5조(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1. (생략) (신설)	제5조(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1. (현행과 같음) 12. 군정에 관한 홍보 편찬업무에 관한 사항
제6조(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4. (생략)	제6조(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신설)	5. 차량, 중기등록에 관한 사항
(신설)	6. 도시계획 확인원,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에 관한 사항
제7조(내무과) 내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7조(내무과) 내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0. (생략)	1. ~10. (현행과 같음)
11. (생략)	13. (현행 제11호와 같음)
(신설)	11. 장학진흥위원회 운영 및 장학진흥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12. 견문보고제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제11조의 1(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정책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2. 농지의 보존, 이용 및 개량에 관한 사항
	3. 농어민 소득증대사업에 관한 사항
	4. 양곡의 관리 수급 조절 및 가공등에 관한 사항
	5. 정부양곡관리 대행기관 및 수탁기관에 관한 사항
	6. 농업용수개발 및 경지정리에 관한 사항
	7. 개간 허가에 관한 사항
	8. 토지 및 농지개량조사 측량 및 집행 감독에 관한 사항
	9. 기타 농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제12조(산업과) 산업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2조(산업과) 산업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농지의 보존, 이용 및 개량에 관한 사항	2. (삭제)
3. 식량작물의 증산 및 장려,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3. 식량작물의 증산 및 장려에 관한 사항
4. ~6. (생략)	4. ~6. (현행과 같음)
7. 양곡의 관리 수급조절 및 가공등에 관한 사항	7. (삭제)
8. 정부양곡관리 대행기관 및 수탁기관에 관한 사항	8. (삭제)
9. ~11. (생략)	9. ~11. (현행과 같음)
제15조(건설과) 건설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5조(건설과) 건설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5. (생략)	1. ~5. (현행과 같음)
6. 농업용수개발 및 경지정리에 관한 사항	6. (삭제)
7. 개간허가에 관한 사항	7. (삭제)
8. 토지 및 농지개량조사 측량 및 집행 감독에 관한 사항	8. (삭제)
9. ~13. (생략)	6. ~10. (현행 9호~13호와 같음)
(신설)	11.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의 종합추진 및 취약지역 개발에 관한사항
(신설)	12. 광고물에 관한 사항
제16조(도시과) 도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6조(도시주택과) 도시주택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1. ~5. (생략)	1. ~5. (현행과 같음)
6. 새마을 사업의 종합추진 및 취약 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6. (삭제)
7. 새마을소득사업 및 광고물에 관한 사항	7. (삭제)
8. ~14. (생략)	6. ~12. (현행 8호~14호와 같음)